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보고서

수탁회사보고서는 이 투자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가 이 투자신탁의 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 국민은행 수탁업무부

□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 2 0 7 3 - 5 1 1 0 (컴플라이언스 팀장 조상기)

1. 간접투자기구의 개요

간접투자기구명	유형	수탁기간	운용회사	판매회사
PCA 국공채신종MMF A-R1	수익증권	2007.4.10 - 2008.4.9	PCA 투신운용	국민은행 굿모닝신한증권 하나은행 하나IB증권

2.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유	주요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해당 없음			

3.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사유	성명	주요운용경력 및 기간	협회등록번호
해당 없음				

4.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내용

일시	안건	수익증권 (발행주식)총수	출석의결권수	의결결과
해당없음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이해관계인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적격여부
성명	관계				
해당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선임일자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2007.05.01	삼정회계법인	1년 자동연장	펀드규모별 차등적용	서면계약

* 감사보수액은 결산일 현재의 펀드 총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결산일 총자산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 법령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 투자회사의 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부합함
간접투자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의 여부	공정함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	적정함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가 법,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에 대한 수탁회사의 시정요구 및 시정요구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적정함
투자신탁(투자회사)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내역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해당없음

8.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산 운용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